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8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민병덕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병덕의원 등 27인

나. 발 의 일 : 2026. 3. 23.

다. 회 부 일 : 2026.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민병덕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9) ○ 안전관리비용 등 세액공제(제1항) - 공제대상: 안전관리비용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그 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 공제율: 6%(중소기업은 10%) - 적용기한: 2029. 12. 31. ○ 안전근로자 세액공제(제2항) - 공제요건: 안전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기·기계장비 및 설비 등의 작동·점검 및 수리 등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공제액: 안전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 1,0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450만원) - 적용기한: 2029. 12. 31. ○ 배제요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 배제(제146조의3) ☐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에 안전관리비용 등에 지출한 금액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안전관리비용등지출액보다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배제하지 않음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민병덕의원안 2026. 3. 23. 발의(의안번호 17685)

☐ 개정안은 ① 안전관리비용 등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②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등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임.¹⁾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함. 동 비용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등이 포함됨.²⁾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³⁾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종사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⁴⁾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등이 포함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 산업재해와 원재료·가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증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⁵⁾

그런데 이와 같이 기업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의 재해율⁶⁾은 0.65%로 전년 대비 0.02%p 감소했으나, 사망만인율⁷⁾은 0.99‰⁸⁾로 전년 대비 0.01‰p 증가했음. 재해자수는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재해율(%): 산재보험 가입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text{재해율}(\%) = (\text{재해자수} / \text{가입자수}) \times 100$$

7) 사망만인율(‰): 산재보험 가입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text{사망만인율}(\text{‰}) = (\text{사망자수} / \text{가입자수}) \times 10,000$$

8) ‰는 0.01%를 의미함

147,130명으로 전년 대비 4,359명(3.1%)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2,248명으로 전년 대비 150명(7.1%) 증가했음.

[2025년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률
○ 재해율(%)	0.65	0.67	-0.02	-3.0
- 사고재해율	0.50	0.54	-0.04	-7.4
- 질병재해율	0.15	0.13	0.02	15.4
○ 사망만인율(‰)	0.99	0.98	0.01	1.0
- 사고사망만인율	0.38 (0.383)	0.39 (0.386)	-0.01 (-0.003)	-2.6 (-0.8)
- 질병사망만인율	0.60	0.59	0.01	1.7
○ 재해자수(명)	147,130	142,771	4,359	3.1
- 사고재해자수	113,305	115,773	-2,468	-2.1
- 질병재해자수	33,825	26,998	6,827	25.3
○ 사망자수(명)	2,248	2,098	150	7.1
- 사고사망자수	872	827	45	5.4
- 질병사망자수	1,376	1,271	105	8.3
○ 가입자수(명)	22,754,436	21,420,560	1,333,876	6.2

주) 재해자수에는 사망자수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현황'

한편, 연도별 재해율은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증가하고, 2025년에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재해율 및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해율	0.63	0.65	0.66	0.67	0.65
사망자 수	2,080	2,223	2,016	2,098	2,248
업무상 질병자수	20,435	23,134	23,331	26,998	33,825

자료: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 개정안은 기업이 안전관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안전관리비용 등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안전관리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0인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기업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구축하였으나 부족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35.7%, ‘거의 구축하지 못함’으로 답한 비율이 11.3%로 높은 수준이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 제일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억)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2024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다음으로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가 제시된 바 있음.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의무 준수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다른 세법상 세액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강화되므로, 안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안전 관련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통합투자세액공제(법 제24조)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법 제29조의8)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⁹⁾,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안전시설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 체계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에 대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들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2022년 세법개정

9)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으로 신설되었음.

그런데 개정안처럼 안전근로자 고용확대에 대해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고용관련 세제지원을 통합한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이유로 세액감면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각 세액감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연도에 안전관리비용에 지출한 금액이 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안전관리비용등지출액보다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각 세액감면은 창업 촉진, 연구인력개발 촉진, 고용 촉진 등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중대산업재해 발생 유무와 연계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각 세액감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¹⁰⁾

따라서, 동 세액공제 신설을 통해 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출을

10)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안전·보건 확보는 기업의 의무로, 모든 기업에 대한 공통적인 지원은 세제지원보다 재정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늘리도록 하는 유인효과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안전근로자 고용에 대한 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하게 자금을 지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